

2011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

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『2011년도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월 28일

중 소 기 업 청 장

I.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

1.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

○ 사업개요

-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지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·신제품 개발을 지원

○ 지원규모 : 817억원

○ 과제구분 :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

- ① **지역사업(개발기간 1년이내, 1억원 한도)** :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(지자체와 매칭)
- ② **전국사업(개발기간 2년이내, 4억원 한도)** : 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거나, 녹색·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(지자체와 비매칭)

* 지원공모는 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sanhak.smba.go.kr>)에서 RFP 확인 후 신청

- * 보급과제는 조합이 신청하며, 1년이내 2억원 한도로 지원

- ③ **국제사업(개발기간 2년이내, 4억원 한도)** : 외국의 대학·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(지자체와 비매칭)

○ 지원내용 및 조건

-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%까지 지원
 - 지역사업 :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75%, 기업 25%
 - 전국 및 국제사업 : 정부 75%, 기업 25%

○ 신청기업의 참여자격

- ① **지역사업**
 - 해당지역 소재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 - 창업과제 : 창업 5년 이하인 중소기업
 - 일반과제 : 창업 5년 초과 9년 이하 또는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

② 전국 및 국제사업

- 전국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하되, 창업 9년 초과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

③ 공동

-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,000% 이상 기업은 신청제외

○ 주관기관(대학·연구기관)의 참여자격

- 대학 :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
- 연구기관 : 국·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특정연구기관 등

*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마감일 15일전, "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"를 (<http://sanhak.smba.go.kr>)에 신청

2.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

○ 사업개요

- R&D 활동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(또는 인근지역)에 설치·운영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

○ 지원규모 : 380억원

○ 지원내용 및 조건

- ① **신규설치(산학·지자체와 매칭, 산연·지자체와 비매칭)**
 -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내(또는 인근지역)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·운영하도록 지원
 - * 사업비의 75% 범위내 2년간 5억원까지 지원
- ② **업그레이드(지자체와 비매칭)**
 - 기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연구소의 규모 확대 및 R&D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화·제품화 추진 유도
 - * 사업비의 75% 범위내 2년간 5억원까지 지원

○ 신청기업의 참여자격

- ① **신규설치** :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(또는 인근지역)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- ② **업그레이드** :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보유 부설연구소의 인프라 확충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
○ 공동

-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,000% 이상 기업은 신청제외

○ 참여기관의 참여자격

-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

3. 연구장비 활용 R&D지원사업

○ 사업개요

-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자원(기술, 인력, 첨단장비 등)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신기술·신제품 창출 지원

○ 지원규모 : 200억원

○ 지원내용 및 조건

- [연구기관 제안과제(지정공모과제)] 사전 발굴된 선도유망기술을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의 첨단인프라를 활용하여 신기술·신제품 창출에 필요한 과제지원
 - 사업비의 75% 범위내 2년간 5억원까지 지원
 - * 지정과제 및 첨단장비 목록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smtech.go.kr>)에 공지

- [기업 제안과제(자유응모과제)] R&D역량 보유중소기업의 혁신형 기업화 유도 및 기술개발 저변확대를 위한 단기과제로 기업현안 애로기술 해결지원
 - 사업비의 75% 범위내 1년간 1.5억원까지 지원

○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

○ 신청기업의 참여자격

- (연구기관 제안과제) 벤처기업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

- (기업 제안과제)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
○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자격

- 특정분야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

4.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

○ 사업개요

- 대학·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R&D 목적으로 공동 활용시 장비이용료를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

○ 지원규모 : 151억원

○ 지원내용

- R&D장비 이용료에 대해 50~60% 범위내 5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지원
 - 창업기업(업력 5년 이하) : 정부지원 60%, 기업부담 40%
 - 일반기업(업력 5년 초과) : 정부지원 50%, 기업부담 50%

○ 신청기업의 참여자격

- 대학·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

○ 주관기관의 참여자격

- 중소기업과 공동활용 가능한 도입금액 1천만원이상 연구장비를 20대 이상 보유한 대학(교) 및 연구기관(유사사업 시행기관 제외)
 - * 사업비의 75% 범위내 2년간 5억원까지 지원

2011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세부 지원내역

구 分	예 산 (억원)	지원한도 (정부지원금)	지원비율	지역 제한
○ 산학연 공동기술개발	817			
- 지역사업	400	1년, 1억원	국비 및 지자체 75% 기업 25%	있음
• 창업과제	200			
• 일반과제	200			
- 전국사업	337	2년, 4억원	국비 75%, 기업 25%	없음
- 국제사업	80	2년, 4억원	"	"
○ 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	380			
- 신규설치	344	2년, 5억원	국비 및 지자체 75% 기업 25%	있음
- 업그레이드	36	2년, 5억원	국비 75%, 기업 25%	없음
○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	200			
- 연구기관 제안과제 (지정공모과제)	150	2년, 5억원	국비 75%, 기업 25%	없음
- 기업 제안과제 (자유응모과제)	50	1년, 1.5억원	"	"
○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	151	0.5억원	창업기업 : 국비 60%, 기업 40% 일반기업 : 국비 50%, 기업 50%	없음

* 과제별 예산 배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

201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개요

(단위: 억원)

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	지원규모	산학연협력 기술개발지원	지원규모
•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	2,091	• 산학연 공동기술개발	817
• 창업성장 기술개발	950	* 과제책임자는 1개 과제만 선정 가능	
•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	100		
•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	530		
• 협회수요처 연계 기술개발	70		
•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	200		
•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	100		
•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	234		
• 제조장비녹색화 기술개발	400		
• 중소기업 R&D 혁신기술	50		
• 제조공정 IT융합기술개발	15		
소 계(11개 세부사업)	4,740	소 계(3개 세부사업)	1,397

-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(대표자, 주관기관, 총괄책임자 포함) 등은 신청·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신청기업(대표자, 총괄책임자 등)은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
○ 사업안내 및 양식

- 중소기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sanhak.smba.go.kr>) → 공지사항
-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www.smtech.go.kr>)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
- 중소기업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 → 지원사업 → 기술 → 해당 사업명

○ 문의처

-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/기업환경개선과
- *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

문 의 처	전 화 번 호			주 소
	국 번	공동기술개발	장비활용기술개발	
서울지방중소기업청	02-509	6774	6775	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
- 기술혁신지원과		6776	6776	
부산지방중소기업청	051-601	5138	5146	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
- 제품성능기술과		5142	5142	1633-1
대구지방중소기업청	053-659	2289	2505	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
- 제품성능기술과		2502	2504	2003-18
광주지방중소기업청	062-360	9159	9156	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
- 제품성능기술과		9155	9155	300
경기지방중소기업청	031-201	6971	6980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
- 제품성능기술과		6964	6962	1012-2
인천지방중소기업청	032-450	1152	1184	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
- 기업환경개선과		1171	1184	445-1 30B-1L
대전지방중소기업청	042-865	6136	6145	대전시 유성구 장동 23-3
- 제품성능기술과		6146	6146	
강원지방중소기업청	033-260	1634	1641	강원도 춘천시 퇴계동
- 기업환경개선과		1634	1642	856-10
충북지방중소기업청	043-230	5338	5346	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-6
- 기업환경개선과		5343	5346	
전북지방중소기업청	063-210	6444	6452	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
- 기업환경개선과		6455	6452	
경남지방중소기업청	055-268	2551	2564	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-3
- 기업환경개선과		2572	2566	
제주특별자치도	064-710	2637	723-2101	제주시 연동 312-1
- 기업지원과		2637	723-2101	

- (사)한국산학연협회
 -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: 042-720-3309 / 3318
 - 기업부설연구소사업 : 042-720-3311 / 3316
 - 연구장비 공동이용사업 : 042-720-3313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-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: 02-3787-0525, 0537
 - 연구장비 활용 기술개발사업 : 042-720-3311